

-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-

제 안 설 명 서

[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]

2024. 7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주차관리과]

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주차관리과장

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「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송현1동은 주택 및 원룸밀집지역으로 증가하는 차량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이면도로 등의 주차난이 심각하며,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.
 - 또한, 2025년 9월 건립예정인 송현복합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은 물론 센터 이용객에게도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 - 본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물론, 야간에는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이에 따라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주차장 조성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조성규모는 매입대상지 4필지, 대지면적 454m²이며 주차면수는 15면 정도입니다.
- 재원은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비 100%이며, 2024년 연말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2025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 8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
- 총 사업비는 16억 5천만원정도로 부지매입비, 공사비 등이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할 예정입니다.

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

-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 주민, 송현복합센터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거주지 생활 환경 개선 및 생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택 및 원룸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00924078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7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주차관리과장)

1. 제안이유

- 송현1동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며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2025년 9월 건립 예정인 송현복합센터 이용객도 함께 이용하는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건립개요

- 위 치: 달서구 송현동 295-70번지 일원
- 규 모: 주차면 15면정도, 대지면적 454m²
- 사업비: 총 1,650백만원정도(주차장특별회계)
- 재원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총사업비	실시설계 용역비	공사비	보상비	비고
1,650	30	420	1,200	

나. 취득대상 현황

위 치	지목	면적 (m ²)	편입면적 (m ²)	보상추정액 (백만원)	소유자	비고
송현동 295-70	대	201	201	1,200	개인 (심**)	건물 포함
송현동 295-71	대	124	124			
송현동 295-89	대	98	98		개인 (진**)	
대명동 1721-34	대	31	31			

다. 추진경과

- 2024. 5월 : 2024년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

라. 향후계획

- 2024. 7월 : 공유재산 심의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비 편성
- 2024. 8.~9월 : 손실보상협의
- 2024. 10.~2025. 1월 : 실시설계용역
- 2025. 2.~3월 : 사전 행정절차(일상감사, 계약심사 등) 진행
- 2025. 3.~8월 :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

3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- 붙임 1.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.
2.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위치도.
3. 관련 법규 1부.

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회계명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: m², 백만원)

구분	2024년			합계			비고		
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		
취	계	토지	4	454	800	4	454	800	
		건물	3	612.4	400	3	612.4	400	
		기타	1	454	450	1	454	450	
득	1. 매입	토지	4	454	800	4	454	800	
		건물	3	612.4	400	3	612.4	400	
		기타	-	-	-	-	-	-	
	2. 기타취득	토지	-	-	-	-	-	-	
		건물	-	-	-	-	-	-	
		기타	1	454	450	1	454	450	

2024~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: m², 백만원)

연번	재산표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고
	구분	소재지	면적				
		계	961	1,650			
1	토지 및 건물	송현동 295-70	201	1,200	2024년	주차장 부지 매입	○ 부지매입 관련비 : 1,200
		송현동 295-71	124				
		송현동 295-89	98				
	토지	대명동 1721-34	31				
2	시설	송현동 295-70번지 일원	507	450	2025년	주차장 조성	○ 조성비: 450 - 공사비: 420 - 설계비: 30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8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

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15. 12. 31., 2022. 9. 21., 2022. 12. 12.)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 (신설 2022. 12. 12.)

1.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